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547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신장식 · 정춘생 · 김선민  
서왕진 · 김재원 · 김준형  
차규근 · 황운하 · 강경숙  
이해민 · 정혜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그 외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협소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괄주의 방식을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 제도는 신고자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신고자의 기본권 침해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뿐만이 아닌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180일 안에 마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그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로 확대함(안 제29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쟁 및 이에 준하는”을 “경쟁을 침해하거나”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이익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진술을 취하거나 공익신고자 및 피신고자”로, “있다”를 “있으며,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 신청인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보호조치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조치 신청 조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br>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br>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br>2. ~ 7. (생략) | 제2조(정의) -----<br>-----.<br>1. -----<br>-----경쟁을 침해하거나-----이익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br>-.<br><br><삭 제><br><br><삭 제> |
|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br>① (생략)<br>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u>공익신고자</u>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br>① (현행과 같음)<br>② -----<br>-----공익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⑨ (생략)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신 설>

공익신고자 및 피신고자-----

--있으며, 관계 기관에 의견 또  
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  
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  
사) ① -----

-----하며, 보호  
조치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 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 신청인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보호조치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  
-----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  
-----5배-----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

-----7년-----

-----7천만원-----

-----.

1. 2. (현행과 같음)

② -----

-----5년-----

-----5천만원-----

-----.

1. 2. (현행과 같음)

③ -----

-----3년-----

-----3천만원-----

-----.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

|  |                                                                         |
|--|-------------------------------------------------------------------------|
|  | <u>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u><br><u>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u><br><u>하의 벌금에 처한다</u> |
|--|-------------------------------------------------------------------------|